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28

발의연월일: 2022. 7. 19.

발 의 자:배준영·김상훈·최승재

박성민 · 김예지 · 이태규

윤창현 • 윤재옥 • 정진석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고 1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어업용 토지·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농산물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하고, 농산물의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 져 국내 식료품 물가 또한 상승 추세에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 농림 어업 및 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및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 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1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양도함	<u>2025년 12월 31일</u>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2년 12월 31일</u>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간명) ①
0 1 1 1 1 1 1 1 1 1
<u>2025년 12월 31일</u>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 · 어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선 · 어업권 · 어업용 토지등 ·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 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 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 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 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20
<u>25</u> 년 12월 31일
<u> </u>

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1. ~ 3. (생 략)
- ② ~ ⑧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